

15. 국군 이라크파병 사건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판례집 16-1, 601>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건이다.

대통령은 2003. 10. 18. 국가안보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5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사건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청구인이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외국으로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파병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별개의견을 밝혔다.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하나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예정자도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이 결정이 선고되기 전 2003. 12. 18. 선고된 2003헌마255등(판례집 15-2 하, 655) 결정에서도 국군의 이라크 파견에 대한 대통령의 파견결정이 문제되었으나 역시 각하된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와는 달리 청구인이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5인의 재판관이 동의한 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4인의 재판관이 동의하였다.